

입법예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 10.

농 립 축 산 식 품 부
(농업시설안전과)

1. 개정이유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법률 제21841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에 따라, 재해의 인정 범위, 보상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민간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와 그 이행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 보상의 인정 범위와 그 종류(안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재해 보상은 공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이수,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 업무의 수행과 그러한 활동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준비·정리와 공사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은 업무 장소 사이의 이동과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질병·부상 및 사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요양·휴업·장해·장례·유족보상을 보장하도록 함.

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계약의 체결 등 조치(안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와 보험료 납부 등과 관련한 법령상 조치를 하고, 같은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조치에는 위촉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위촉된 모든 수리시설감시원을 대상으로 하며, 법령상 정한 재해와 보상이 모두 포함되도록 함.

다. 재해 보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의 규정(안 제14조의2제5항)

재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조치와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수리시설감시원에 대한 재해보상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7조의2

제3항에서 “수리시설감시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는 경우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을 말한다.

1.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이수
2.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 업무의 수행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활동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준비·정리와 공사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은 활동 장소 사이의 이동

② 공사는 수리시설감시원의 위촉기간 중 제1항에 따른 재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간병보상을 포함한다)
2. 휴업보상
3. 장해보상
4. 장례보상
5. 유족보상

③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리시설감시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 보험료 납부와 보험급여 청구 지원 등 같은 법의 적용에 필요한 조치
2.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조치

④ 공사가 제3항제2호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이 수리시설 감시원의 위촉 기간 전부를 포함할 것
2. 위촉된 모든 수리시설감시원을 피보험자 또는 보상 대상자로 할 것
3. 제1항에 따른 재해 및 제2항 각 호의 보상을 보험계약의 보장대상 및 보장내용에 포함할 것

⑤ 제3항에 따른 재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조치와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4조의2(수리시설감시원에 대한 재해 보상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7조의2 제3항에서 “수리시설감시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을 말한다. 1.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이수 2.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 업무의 수행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활동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준비·정리와 공사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은 활동 장소 사이의 이동 ② 공사는 수리시설감시원의 위촉기간 중 제1항에 따른 재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간병보상을 포함한다) 2. 휴업보상 3. 장해보상 4. 장례보상

5. 유족보상

③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리시설감시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 보험료 납부와 보험급여 청구 지원 등 같은 법의 적용에 필요한 조치
2.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조치

④ 공사가 제3항제2호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이 수리시설감시원의 위촉 기간 전부를 포함할 것
2. 위촉된 모든 수리시설감시원을 피보험자 또는 보상 대상자로 할 것
3. 제1항에 따른 재해 및 제2항 각 호의 보상을 보험계약의 보장대상 및 보장내용에 포함할 것

⑤ 제3항에 따른 재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조치와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 정관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1872